
 논 문

1960-1990년대 프랑스의 국제입양 양상과 한인여성입양*

문 지 영

- | | |
|---------------------|----------------------|
| I. 머리말 | III. 프랑스의 한인여성입양 양상과 |
| II. 프랑스의 입양정책과 국제입양 | 정체성 문제 |
| | IV. 맺음말 |

 국문초록

국제입양은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트랜스내셔널 이주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입양은 노동이 주나 결혼이주 같은 일반이주와 달리 입양인이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국경을 넘는, 관계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한 비자발적 이민’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이주 양태를 보여준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이어 프랑스에 많은 한인입양인을 보낸 세계 최대 입양송출국가였다. 그럼에도 한민국제입양의 역사는 오랫동안 ‘아기수출 국가’라는 국가적 수치와 오명 아래 잊히고, 때로 은폐되면서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국제입양의 역사적 배경과 실상을 밝힘으로써 트랜스내셔널 이주역사의 틀 안에서 국제입양의 위치와 의미를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60-1990년대 프랑스의 입양정책과 국제입양, 이어 프랑스의 한인여성입양 양상 및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7821).

I. 머리말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한인입양인 출신의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한국명 김종숙/1974년 입양)을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 장관에 임명했다. 당시 펠르랭의 장관 임명은 유럽의 경제위기와 함께 반이민·민족주의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좌파 정부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문화다양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얼굴”로 평가받았다.¹⁾ 또 2016년 또 다른 한인입양인 출신의 장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és/한국명 권오복/1975년 입양)가 국가개혁 장관으로 기용되었다. 사회당 정부 아래서 한인입양인 2명이 동시에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프랑스나 한국이나 사상 초유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고, 두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한인입양인의 상징이 되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유럽으로의 국제입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던 197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 입양되었고, 중산층 가정에서 유복한 성장기를 보내며, 프랑스 최고의 명문학교를 졸업한 후 정계에 입문해 장관직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둘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은 뱃속까지 프랑스인이며,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관심이 없고, 친부모를 찾아볼 생각도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을 마치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앞다퉈 선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무관심하거나 은폐되었던 한인 국제입양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실체적 연구 성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다.²⁾

1) 한겨레신문, 「입양아에서 프랑스의 ‘플뢰르’가 되기까지…」(2012.05.12).

2) 2017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주는 재외국민(영주권자·일반체류자·유학생)과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로 분류된다. 1996년부터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입양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재외동포 통계에서는 여전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 국외로의 입양과 입양인을 지칭하는 용어도 해외입양, 국외입양, 국제입양, 그리고 해외입양인, 국외입양인, 국제입양인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인종 간 입양(adoption

국제입양은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트랜스내셔널 이주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입양은 노동이주나 결혼이주 같은 일반이주와는 다른 양상과 성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경우에 해당한다.³⁾ 흔히 국제입양은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 강제이주,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이나 흑인노예화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의 ‘강제이주(forced migration)’⁴⁾로 규정되곤 하나 실상은 간단치 않다. 일반적으로 국제입양의 과정에는 국가, 개인(입양인과 입양부모), 가정, 입양알선기관, 국제기구 등 여러 다른 관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매우 복잡한 ‘관계의 변증법’이 작동하는 데다, 입양알선기관의 논리와 국가의 입양규제 논리가 항상 병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항관계를 나타낸다. 그 점에서 국제입양을 단순한 강제이주의 형태보다는 입양인이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국경을 넘는, 관계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한 비자발적 이민’ 형태로 규정할 수 있겠다.⁵⁾ 특히 2000년대 이후 국내 학계에서도 이주 문제와 관련해 내셔널리즘 관점에서 벗어나 트랜스내셔널리즘 관점에서 재조명하려는 연구가 붓물을 이루고 있으나,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 연구는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역사학계에서 일반이주에 대한 연구 성과와 비교할 때 국제입양 내지 한인입양인에 대한 역사연구는

interraciale)’을 의미하는 ‘국제입양(adoption internationale 또는 transnationale)’, ‘국제입양인’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 3) Yves Denéchère, “Vers une histoire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102(2009/2), pp. 117-129; “Nouvel acteur et nouveau phénomène transnationaux: Terre des Hommes et l’adoption internationale (1960-1980)”, *Relations internationales*, n° 142(2010/2), pp. 119-136. 영·미권에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인의 출생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면서 두 국가 사이에서 이뤄지는 국제입양을 “intercountry adoption” 또는 “transnational adoption”으로 부르기도 한다.

- 4) William Petersen, “A general typology of mig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3. n° 3(june 1958), pp. 256-266.

- 5) 이진명, 「프랑스 이민 정책과 한인 사회」, 『유럽 한인의 역사(상)』(국사편찬위원회, 2012), 216쪽.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국제입양에 있어서도 일반이주에서 나타나는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한인입양여성의 가시화를 통해 국제입양의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가 깊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내셔널 이주역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프랑스 입양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양 관련법의 변천 과정을 통해 입양 동기 및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어떻게 국제입양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입양의 역사는 매우 길지만 미성년자 입양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프랑스혁명 때다. 이후 1804년 나폴레옹 민법이 제정되면서 성인 입양만 허용되고 미성년자 입양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민법은 법적 후계자가 없는 50세 이상의 기혼 남성이 가계와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25세 이상의 성인을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제한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미성년 아동입양 관련 법안이 처음 등장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전쟁고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식이 없는 40세 이상의 부부가 입양할 수 있도록 개정된 1923년 법에 따라 입양인의 범위는 미성년자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1939년, 1949년, 1966년, 1976년, 1996년 입양관련법의 개정으로 국내입양 뿐 아니라 국제입양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이 법들의 목적은 고아나 기아에게 사생아보다 더 유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입양부모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가족으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된 전쟁의 희생자인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선언 및 구호활동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제입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⁶⁾

6) 1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사회개혁가인 애글란타인 젠티(Eglantyne Jebb)은 1919년 전쟁고아 및 기아의 구호를 목적으로 <세이브더칠드런펀드(Save the Children Fund)>를 설립했다. 이어 1923년 최초의 ‘세계아동헌장’으로 불리는 아동권리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서 아동의 신체적·도덕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제공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은 1924년 국제연맹에 의해 ‘제네바 선언’으로 공식 채택되

1970년대 프랑스에서 국제입양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간주될 정도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입양수용국이 된 프랑스에서 이 “독특한 이주(migration singulière)” 양태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자가 아닌, 법학자·심리학자·민족학자·사회학자·소아과의사 등에 의해 진척되었다.⁷⁾ 그중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한인입양인 관련 연구는 심리학과 비교사회학 분야의 박사학위논문 두 편에 불과하다.⁸⁾ 1990년대 초부터 미국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주로 비역사학자들에 의해 국제입양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⁹⁾ 이같

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역시 1959년 ‘아동권리선언’을 재차 천명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국제적 발판이 확립되었다.

- 7) Marie-Pierre Marmier-Champenois, *L'Adoption: étude de sociologue juridique*(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69); Jacques Foyer & Catherine Labrusse-Riou (dir.), *L'adoption d'enfants étrangers*(Paris: Economica, 1986); Brigitte Trillat, “Une migration singulière: l'adoption internationale”, *L'Adoption des enfants étrangers*(Paris: Centre International de l'Enfance, 1993); *L'adoption: essai sur les institutions*(Lyon: Presses Universitaires de Lyon, 1995); Isabelle Cogliati, “Adoption internationale et respect de l'enfant”, *Cahiers rémois d'études internationales*, n° 1(1999); Françoise Maury, *L'adoption interracial*(Paris: L'Harmatan, 1999); François Boulanger, *Enjeux et défis de l'adoption: étude comparative et internationale*(Paris: Economica, 2001); Richard Crone, et al., *L'Adoption: aspects internes et internationaux*(Paris: Defrénois, 2006); Yves Denéchère, “Les effets du développement sur les politiques d'adoption des enfants: les cas de la Corée du Sud et du Vietnam”,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e: Apports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au développement socio-économique* (Hanoï, 2011); Yves Denéchère, *Des enfants venus de loin-Histoire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Paris: Armand Colin, 2011); Yves Denéchère & David Niget, *Droit des enfants au XX^e siècle: Pour une histoire transnationale*(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5) 등.
- 8) Françoise Maury, “Les mécanismes intrapsychiques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t interracial: l'adoption des enfants coréens en France”, *Thèse de doctorat (Psychologie)*, Université de Paris VIII(1995), 616 p.; Elise Prébin, “Adoption internationale: les revenants de Corée”, *Thèse de doctorat(Ethnologie et Sociologie comparative)*, Université de Paris X(2006), 385 p.
- 9) Howard Altstein & Rita Simon (ed.), *Intercountry Adoption: A Multinational Perspective*(New York: Praeger, 1991); Christina Zaar, *Intercountry Adoptions: What is the State of Research and What New Fields Need to be Investigated?* (Stockholm: Solna, 1991).

이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해 입양 관련 역사연구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국제입양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양 관련 기록 및 자료가 아예 개방되지 않거나, 선별적 개방에 따른 절대적 자료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1953년 최초의 국제입양이 시작된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대의 입양송출국이던 한국은 국제입양 연구에 있어서 주된 연구대상 국가들 중 하나다. 그럼에도 ‘아기수출 국가’라는 국가적 수치와 관련된 연구를 꺼리는 학계의 분위기와 입양알선기관들의 입양관련 자료가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는 등 한국 사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에 국내에서의 연구 성과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연구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사회학·인류학·아동복지학 분야를 중심으로 입양제도와 정책, 입양아의 적응과 정체성, 국제입양의 지리학적 분포와 관련해 이뤄져왔다. 국내에서 일반이주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마찬가지로 트랜스내셔널 이주 흐름에서 한인입양여성의 가시화 및 입양과 젠더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국제입양의 역사를 다룬 연구 성과는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총서』 17권에서 유럽의 한인입양에 대한 개설이 거의 유일하다.¹⁰⁾ 현재 프랑스 한인입양인의 규모는 대략 1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나 아직까지 이들은 재외동포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이주나 디아스포라의 주체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그나마 국내에서 프랑스 한인입양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2010년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입양 양상을 다룬 인류학·불문학·법학 분야의 세 편에 불과하다.¹²⁾ 현재 국내외를 불문하고 프랑스 한인여성

10) 토비아스 휘비네트, 「유럽 한인의 역사적 경험: 해외 입양 및 입양」, 『유럽 한인의 역사(하)』(국사편찬위원회, 2013), 171-257쪽.

11) 이진명, 「프랑스 이민 정책과 한인 사회」, 216쪽.

12) 임봉길, 「프랑스에 입양한 한국교아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의 형성」, 『재외한인연구』 15호(2003), 202-257쪽; LI Hong,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le cas des enfants coréens」, 『프랑스어문교육』 제47집(2014.11), 297-326쪽; 서

입양 관련 자료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선행연구도 전무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향후 프랑스 한인여성입양 관련 역사연구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국가적 수치’라는 오명 아래 잊히고, 때로 은폐된 한인국제입양의 역사적 배경과 실상을 밝힘으로써 트랜스내셔널 이주역사의 틀 안에서 국제입양의 위치와 의미를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60-1990년대 세계 2위의 국제입양수용국이 된 프랑스의 입양정책과 국제입양, 이어 프랑스 한인여성입양의 양상 및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II. 프랑스의 입양정책과 국제입양

20세기에 벌어진 전쟁의 참화는 ‘국제입양’이라는 초유의 현상을 낳았다. 프랑스 최초의 국제입양 물결은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정부가 전쟁 동안 독일의 프랑스 점령지역에서 프랑스 군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수백 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입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서 찾을 수 있다.¹³⁾ 독일인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버리거나 포기할 경우에만 입양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전쟁의 희생양이랄 수 있는 버려진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도주의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 따른 인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¹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는 미국으로 입양인을 송출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1960년대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

종희, 「익명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프랑스의 입양절차」, 『가족법연구』 제28권 3호(2014), 75-98쪽.

13) Yves Denéchère, “Des adoptions d’Etat: les enfants de l’occupation française en Allemagne, 1945-1952”, *Revue d’Histoire Moderne & Contemporaine*, n° 57-2 (2010/2), pp. 159-179.

14) LI Hong,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le cas des enfants coréens”, 298쪽.

중인 한국·알제리·콜롬비아·베트남에서의 입양을 시작해 1970-1980년대 대에 국제입양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국제입양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5월 29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¹⁵⁾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입양수용국 및 송출국 모두 일방적인 수단으로 국제입양을 규제할 수 없고 합의된 기준에 따라야하나,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입양정책, 특히 입양수용국의 입양인 조건, 입양부모 조건, 입양 절차에 대한 규정 등에 차이가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 1980-2001년 프랑스 국제입양인 수(단위: 명)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입양아	935	1,256	1,644	1,946	1,947	1,988	2,227	1,723	2,499	2,408	2,956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입양아	2,873	2,418	2,783	3,075	3,028	3,666	3,528	3,777	3,528	2,954	3,094

(출처: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Statistiques de la Mission de l'adoption internationale, 2002)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의 입양은 가족정책 및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804년 나폴레옹 민법에서 입양에 관한 제도를 법제화한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그 틀을 유지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국제입양을 수

15)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1993년에 체결되고 1995년에 발효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9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특히 한국과 국제입양을 진행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 6개국이 모두 협약에 가입했으나,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송출국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연합 등 국제 사회와 국회가 협약 가입을 촉구해 왔다. 2013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약에 서명했고, 2017년 정부가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용한 동기 및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법적·제도적·사회문화적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입양 관련 사회적·법제적 변화는 입양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사고방식 및 동기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이 두 변화 요소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일반적인 입양 동기를 보면 입양인에게 정상 가정을 갖게 해주겠다는 인도주의적 실천으로서의 전통적 경우, 불임으로 자신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이 잘 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스 입양관련법의 변천과정을 통해 입양 동기 및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804년 나폴레옹 민법에서 입양은 법적 후계자가 없는 50세 이상의 기혼 남성에게만 허용되었으며, 입양인은 25세 이상으로 입양자의 가계와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다. 1900년 50명에 불과하던 입양인 수는 1921년 3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¹⁶⁾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고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식이 없는 40세 이상의 부부가 입양할 수 있도록 개정된 1923년 6월 19일 법에 따라 입양인의 범위도 미성년자와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되었다. 1939년 7월 29일 법에 따라 입양인이 입양자의 성(姓)을 따를 수 있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입양자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어 1949년 4월 23일 법은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부모 사이의 차이를 없앴으로써 입양부모가 입양인의 출생 당시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1923년 개정법에서 미성년자 및 외국인 아동의 입양을 동시에 허용했지만, 당시 입양을 기다리는 내국인 아동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입양은 그다지 활발치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을 거치면서 프랑스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피임의 일반화, 미혼모의 법적 지위 개선, 비전통적 가족의 사회적 용인 등 여러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미혼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런 변화는 백인입양인 수의 감소와 국제입양의 증가로 이

16) Yves Denéchère, *Des enfants venus de loin*, p. 22.

어지게 되는데, 1960년대 이후 국제입양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인입양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갔다.¹⁷⁾ 그런 중에 1966년 7월 11일 법은 과거의 가계 및 유산 상속을 위한 입양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입양인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입양 개념을 담았다. 또 결혼한 부부 외에 35세 이상의 독신자 포함한 모든 남녀에게 입양이 허용되는 진전을 이뤄냈다.

프랑스에서 피임과 낙태 관련 법률이 완화된 것이 시작한 것은 1960-1970년대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였다. 이런 변화는 국제입양 비율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7년 피임법(*loi Neuwirth*)과 1975년 자발적 임신중지법(*loi Veil*)이 제정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 줄고 출생률이 감소하자 국내입양 규모도 차츰 줄어들었고, 1970년에 8.5%였던 국제입양 비율이 1973년에 15%로 증가했다.¹⁸⁾ 1975년에는 프랑스 사회에서 국제입양이라는 사회현상의 범위와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졌음을 방증하는 조치로 <고위입양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doption*)>가 발족함으로써 국제입양 관련 조치 및 법률의 틀을 만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 1976년 12월 22일 법에 따라 입양자의 입양허용 연령을 35세에서 30세로 낮추고, 입양자와 입양인의 연령 차이를 15년으로 줄이면서 1979-1994년 프랑스 국제입양인 수는 72개국 출신의 총 33,000명에 달했다.¹⁹⁾ 또 1996년 7월 5일 법은 입양자의 연령을 다시 30세에서 28세로 낮추고, 결혼한 부부의 혼인 지속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²⁰⁾ 이 법은 기존의 가계 및 유산의 상속을 위한 입양 또는 인

17) 박순호,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권 6호(2007), 702쪽.

18) Yves Denéchère, *Des enfants venus de loin*, pp. 117, 119.

19) Alexandra Huet et al., “L’adoption d’un enfant étranger”, *Revue juridique de l’Ouest*, n° 4(1999), p. 435.

20) Françoise Maury, *L’adoption interraciale*, pp. 19, 21. 1968년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낙태의 자유 및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 및 운동이 이어졌다. 당시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정부의 보건부 장관이었던 시몬 베이(Simone Veil)의 주도 아래 낙태를 금지한 1975년 1월 공중보건법을 개정해

도주의적 실천 차원의 입양을 넘어 입양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1966년 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입양법은 결혼한 지 2년이 경과된 28세 이상의 부부 또는 28세 이상의 독신자에게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²¹⁾ 입양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은 먼저 불임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되, 입양인이 입양 가정에 잘 적응하기 위해 가급적 형제자매가 같이 입양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또 이미 친자식이 있거나 여러 명의 입양을 한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는데, 한인입양인 가정의 약 25-30%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²²⁾ 오랫동안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적 관심사였던 프랑스에서 입양에 대한 사고방식의 점진적 변화는 사회보장제도 및 교육제도 등 여러 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흔히 프랑스의 입양부모는 펠레랭이나 플라세의 경우처럼 부유층이나 빈곤층이 아닌 중산층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²³⁾ 이들이 입양을 통해

임신 10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이뤄진 자발적 임신중단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일명 ‘베이법’이 통과되었다. 1979년 12월 31일 개정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임신중단을 합법화했으며, 1982년 12월 31일 임신 중단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다.

- 21)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Adoption simple et adoption plénière: quelles différences?” (10 mai 2017) [[http://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246\(2018.11.14 검색\)](http://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246(2018.11.14%20검색))]. 프랑스 입양 형태는 ‘단순입양(adoption simple)’과 ‘완전입양(adoption plénière)’으로 구분된다. 단순입양과 달리 완전입양에 해당하는 국제입양의 경우 입양부모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입양부모의 성(姓)과 재산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완전입양의 경우 ‘파양(révocation)’은 인정하지 않는다.
- 22) 임봉길, 「프랑스에 입양한 한국고아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의 형성」, 226쪽. 점차 입양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결혼 부부의 혼인지속 기간이 축소된 것은 한국처럼 젊은 부부에게 입양되기를 원하는 입양송출국 대부분의 요청 때문이었다. 입양인 송출을 위해 한국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다. 예컨대 독신자, 첩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커플에게는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다. 입양부모는 최소한 입양인과 연령 차이가 15년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 23) 같은 논문, 229쪽. 입양가정 부모의 직업은 교수 및 교사, 상공업자, 공무원, 중소기업인, 의사 및 간호사, 엔지니어, 사회복지담당자, 농민, 군인, 어부 등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경제·의료 혜택은 매우 크며, 이 같은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지원이 프랑스가 미국 다음으로 국제입양 비율이 높은 이유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프랑스에서의 입양은 국내입양보다 국제입양이 대세인 까닭에 입양알선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국제입양은 입양아의 이주 시기, 이주 절차 및 방법, 입양가정 등이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프랑스와 한국에서 활동하던 <홀트아동복지회(Holt International Children's Services: HICS)>나 <인간의 대지-프랑스(Terre des Hommes-France: TDH-F)> 같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관들은 정부의 허가 아래 입양부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국제입양 업무를 대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準)정부기관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유럽으로의 국제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뿐이며, 프랑스로의 국제입양의 경우 <홀트아동복지회>가 전담하고 있다.²⁴⁾

1960-1990년대 프랑스에서 한인입양은 <인간의 대지-프랑스>, <원인(La Cause)>, <외국 어린이의 햇빛(Le Rayon de Soleil de l'Enfant Etranger)>, <전국입양기관(L'Oeuvre Nationale de l'Adoption)>, <세계 어린이의 친구(Les Amis des Enfants du Monde)>의 5개 입양알선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첫째, 1962년 12월 8일에 창설된 <인간의 대지-프랑스>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인간의 대지(Terre des Hommes: TDH)>²⁵⁾ 지부로 출발했

다양하다. 입양인과 입양부모는 가족수당 외에 입양수당, 교육수당, 가계부양수당, 출산수당, 의료보험, 입양휴가, 무상교육 등 갖가지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입양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

24) 박순호,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697, 704쪽. 1954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국제입양은 <대한사회복지회(1954)>, <홀트아동복지회(1956)>, <한국사회봉사회(1964)>, <동방아동복지회(1972)>의 4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5) 1960년 프랑스 출신의 약제사였던 에드몽 카이저(Edmond Kaiser)가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전쟁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구호를 위한 <인간의 대지>를 창설했다. 이 단체는 무료봉사와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1965-1967

다. 2차 세계대전 말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생한 수백만 명의 고아, 기아, 미아, 혼혈아 등에 대한 보호 관리는 국제아동보호 단체들에 의해 이뤄졌다.²⁶⁾ 국제적 차원에서 입양 문제가 쟁점이 된 계기는 195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아동권리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부터다. 특히 한국전쟁, 알제리전쟁, 베트남전쟁으로 고통 받고 불행을 겪는 아이들을 거둬 가정을 찾아 입양시켜주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출현했다. 1960-1970년대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스위스 모델을 따라 〈인간의 대지〉 각국 지부가 결성되었다.²⁷⁾ 〈인간의 대지-프랑스〉는 1965년부터 알제리 남아 1명과 1967년 베트남 남아와 여아 2명을 입양시키면서 국제입양을 개시했다.²⁸⁾ 둘째, 〈원인〉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해군의 개신교 군목을 지낸 프레디 뒤를르망(Freddy Durrleman)에 의해 1920년에 창설되었다. 이 단체는 1923년 프랑스가 미성년자 입양을 허용하면서부터 입양 업무를 시작해 국제입양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다. 1969년 8월 1일부터 한인입양을 위한 자격을 획득한 이래 1993년 12월 31일 당시 1,174명의 한인아동을 입양시켰다. 하지만 1994년 3월 22일 입양 자격을 포기했다. 셋째, 〈외국 어린이의 햇빛〉은 〈국제아동보호협회〉 회장인 앙리 롤레(Henri Rollet)에 의해 창설되었다. 원래 이 단체의 취지는 복지기관의 구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으나, 1975년부터 한인입양

년 전쟁고아 3명(알제리 1명, 베트남 2명)을 처음 맞아들이면서 국제입양을 시작했다. 원래 『인간의 대지』는 1939년 프랑스의 소설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의 작품 제목으로 유명한데, 생텍쥐페리의 부인(Consuelo de Saint-Exupéry)은 이 단체가 동명의 이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26) 대표적 국제 NGO 단체로는 1920년, 1924년, 1946년에 각각 창설된 〈국제아동보호협회(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Union: ISCU)〉와 〈국제사회복지사업(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SS)〉, 〈국제연합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을 꼽을 수 있다.

27) Françoise Maury, *L'adoption interracial*, pp. 27-28.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인간의 대지〉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지부가 설립되었다.

28) *Ibid.*, p. 28.

을 시작했다. 1996년 12월 31일 당시 3,171명의 한인아동을 입양시켰고, 한인입양 업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넷째, <전국입양기관>은 1857년 루시앵 메트리아(Lucien Maïtrias) 신부에 의해 창설되었다. 1968년 5월부터 한국과 접촉했으나, 최초의 한인입양은 1976년 7월 3일 예야 이뤄졌다. 이후 1993년 12월 한인입양이 중단될 때까지 총 1,050명을 입양시켰다. 다섯째, <세계 어린이의 친구>는 1976년부터 한인입양을 시작해 1976-1996년 3,500명 이상의 한인아동을 입양시켰으며, 지금까지 계속 입양업무를 이어가고 있다.²⁹⁾

이 가운데서 특히 <인간의 대지-프랑스>는 1978년 국제입양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프랑스 한인입양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인입양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특별한 계기는 전쟁고아의 실상을 다룬 TV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였다. 1967년 10월 6일 프랑스 국영TV 방송에서 한국 사회가 버린 혼혈아들의 비극적 상황을 그린 17분 15초짜리 다큐멘터리 <한국: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Corée: les enfants invisibles)>³⁰⁾이 방영되었다. 이 방송 후에 정부의 인가를 받은 여러 입양알선기관이 설립되었고, 그중에 <인간의 대지-프랑스>가 당시 <홀트양자회>와의 협약을 통해 1969년 3월 30일 3세와 4세의 한인여아 2명을 프랑스로 입양시키면서 최초의 한인입양을 위한 공식 알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3월 30일 공항에 도착한 한인여아 2명을 넘겨받아 위탁가정에 보낼 책임을 맡은 <인간의 대지-프랑스> 지역대표의 편지 내용을 보면 당시 한인여아에 대한 정보가 잘 나타나있다.³¹⁾

오늘 아침 우리 단체가 최초로 입양시킬 2명의 한인여아가 도착했습니다

29) Ibid., pp. 39-40.

30) Office de Radiodiffusion-Télévision Française, “Corée: les enfants invisibles”, *Cinq Colonnes à la Une*(6 octobre 1967)[<http://www.ina.fr/emissions/cinq-colonnes-a-la-une>].

31) Françoise Maury, “Les mécanismes intrapsychiques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t interracial: l’adoption des enfants coréens en France”, Annexe n° 3(Arrivée des premiers enfants coréens en France), pp. 527-528.

다. 공항에서 아이들을 보자마자 금방 누군지 알아볼 정도로 사진에서 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조금 하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인솔자는 고아원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행했으며, 많은 애정을 줘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은 옷도 잘 입지 못하고 변변한 가방도 없었습니다. 음식과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이들은 -베트남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위탁 가정의 초기에는 가급적 익힌 쌀밥을 먹이다가 차차 다른 음식을 먹일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에게 제보된 고아원에서의 결핵에 대해 묻자 인솔자는 한국에서 결핵이 만연하고 있지만 고아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를 빨리 끝내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한테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969-1977년 사이에 833명(여아 450명, 남아 383명)의 한인아동이 <인간의 대지-프랑스>를 통해 프랑스로 입양되었다.³²⁾ 그런 상황에서 당시 북한은 “남한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아기를 서양인에게 팔아넘기고 있고, 가난한 남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아이들 뿐”³³⁾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70년 12월 북한의 비난 선동에 맞서 국가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유럽으로의 국제입양 중단을 결정했으나,³⁴⁾ 입양 중단에 대한 국제여론의 압력과 입양수용국들 사이의 약속 때문에 2개월 후 결국 국제입양을 재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대지-프랑스>는 1971년 3월 30일 파리주재 한국대사

32) Françoise Maury, *L'adoption interracial*, p. 39.

33) 토비아스 위비네트(한국이름: 이삼돌), 『해의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한국 대중 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뿌리의 집 옮김(소나무, 2008), 384쪽. 한국 정부는 1976년 이후 국제입양이 북한의 선동선전에 이용당할 것을 우려해 국제입양인 수를 공개하지 않았고, 국제입양 관련 일체의 자료도 대외비로 처리했다.

34) 이해성, 「폴란드에 남겨진 북한 전쟁고아의 자취를 찾아서」, 『중동유럽한국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81-95쪽; 중앙일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찾아서」(2018.10.17). 최근 북한도 1950년대 초부터 전쟁고아들을 소련과 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동독 등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 위탁 양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51-1959년까지 폴란드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북한 고아는 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에 한 달에 10명씩 입양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했고, 4월 말 한국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³⁵⁾ 이처럼 한국 정부의 국제입양정책은 국내외 여론의 향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1978년 〈인간의 대지-프랑스〉는 다른 해결책이 불가능할 경우 외에 국제입양을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하고, 향후 관련국들에 직접적으로 개발 지원을 하는 등 다른 형태의 활동을 우선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인간의 대지-프랑스〉가 국제입양 중단을 결정하는 데에 여러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75년 주요 국제입양 송출국인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입양의 주요 공급원이 차단되었고, 임신중절을 허용한 ‘베이법’에 따라 입양할 수 있는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겨났다. 입양 수요는 많은데 국내외 입양 공급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던 ‘아동매매(traffics d’enfants)’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등이 맞물리면서 국제입양 대신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후원(parrainage) 사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여러 논의 끝에 〈인간의 대지-프랑스〉는 1977년 말 기존의 국제입양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에서 입양되기 어려운 혼혈아나 장애아를 입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³⁶⁾

1981년 〈인간의 대지-프랑스〉가 국제입양을 전면 중단하자, 프랑스는 1983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각 지방코뮌 소속의 〈아동사회복지국(Aide Sociale l’Enfance)〉이 아동입양과 아동복지 일반을 담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어 1988년에는 외무부 산하에 국제입양 업무를 전담하게 될 〈국제입양대표단(Mission pour l’Adoption Internationale)〉이 발족되었다. 이들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양을 주선하도록 위임받은 입

35) Archives de TDH-F, “Note du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s Affaires Sociales de Corée du Sud(27 février 1971); “Courriers de TDH-F à l’ambassade de Corée du Sud en France”(30 mars 1971); “Courriers de TDH-F à l’ambassade de France à Séoul”(23 avril et 13 mai 1971); Yves Denéchère, “Nouvel acteur et nouveau phénomène transnationaux: Terre des Hommes et l’adoption internationale(1960-1980)”, p. 127.

36) Archives de TDF-F, “Conventions administratives”(5-6 novembre 1977).

양알선기관은 전국에 42개가 있었는데, 그중 현재까지 한인입양을 전담하고 있는 단체는 <세계 어린이의 친구>, <외국 어린이의 햇빛>뿐이다.³⁷⁾ 그때부터 한인입양은 한국의 <홀트아동복지회>³⁸⁾와 위의 2개 프랑스 입양알선기관 사이에만 이뤄지게 된다. 그렇지만 입양알선기관들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해서 국제입양이 무한정 이뤄진 것은 아니다. 1960-1970년대에 프랑스에서 국제입양이 하나의 사회현상을 이루면서 국가의 역할도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양알선기관들은 국제기구들과 동시에 자체 규제에 나서게 되었고, 일부 입양관련 국제운동가들이 국제입양의 형태와 목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입양수용국들도 본격적인 규제정책을 취하게 된다. 이처럼 입양수용국 및 송출국에서의 국제입양정책의 변화는 여러 대내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III. 프랑스의 한인여성입양 양상과 정체성 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에서 한인입양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단연 프랑스다. 프랑스의 한인입양 배경과 그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국제입양의 정책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의 참화로 생겨난 고아, 혼혈아, 미아, 기아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정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한국의 국제입양은 전쟁,

37) 임봉길, 「프랑스에 입양한 한국고아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의 형성」, 208쪽.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는 1970년 베트남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 창립한 <베트남 어린이의 친구(Amis des Enfants du Vietnam)>의 후신으로 1976년에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로 이름을 변경했다. 주로 한국·브라질·에티오피아·파테말라·인도·마다가스카르·필리핀 등지의 국제입양을 담당하고 있다. 1976년에 창설된 <외국 어린이의 햇빛>은 주로 한국·아이티·인도·레바논·베트남·마다가스카르·말리·루마니아 등지를 담당하고 있다.

38) Françoise Maury, *L'adoption interracial*, p. 37. 1956년 3월 해리 홀트(Harry Holt) 부부는 <홀트양자회(Holt Adoption Program: HAP)>를 설립했고, 1972년에 <홀트아동복지회(HSCI)>로 명칭을 변경했다. HSCI의 예산의 30%는 한국 정부가, 70%는 HSCI와 협력하고 있는 외국의 19개 입양기관이 포함된 후원자들에 의해 충당되었다.

가난, 외화벌이, 순혈주의적 가부장제,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산업화, 미혼모 양산 등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유한 사회현상을 낳았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입양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못해 개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국제입양이 먼저 이뤄졌으나, 이후 한국 국제입양의 특징은 줄곧 정부 주도의 ‘국가주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승만 정부 당시 미국 및 캐나다 등지의 해외 유력인사나 국제입양 알선기관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정부는 거기에 적극 응답했다.³⁹⁾ 1955년 ‘고아양자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국제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제입양인 수가 1956년에 671명, 1958년에 903명으로 증가했다.⁴⁰⁾

1960년대 초 한국은 여전히 대량 빈곤과 인구 과잉으로 점철된 전통적인 농업사회였고, 해마다 격증하는 농촌 노동력의 과잉과 이로 인한 이농인과 실업자의 증가 등 인구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가족계획과 국외로의 이주(이민)라는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⁴¹⁾ 이미 1959년부터 정부는 <해외이민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외이주 장려정책을 펼쳤는데,⁴²⁾ 1960년대에 들어와 가족계획과 국외이주라는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하는 해결책으로서 국제입양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1961년 한국 최초의 현대적 입양제도⁴³⁾로 알려진

39) 외교부 외교사료관, “고아 국외입양(1956-1960)”, P-0002-18/1390/1485.4/

40) 재외동포재단 통계자료(2006).

41) Tobias Hübinette, “Histoire de l’adoption coréenne”, Eleana Kim (ed.), *Community 2004.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Seoul: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004), p. 5. [http://www.tobiashubinet.se.histoire.pdf(2018. 09.03. 검색)].

42) 외교부 외교사료관, “재외국민 실태조사”, P-0002-02/1374/791.3: Tobias Hübinette, “The adopted Koreans of Sweden and the Korean adoption issu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6, n° 1(2003), p. 255.

43)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1955-2005』(홀트아동복지회, 2005), 123쪽.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란 대를 잇기 위한 전통적인 입양에서 벗어나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마침내 국제입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⁴⁴⁾ 이어 1965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제48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고아입양은 상대국에 대해 외화를 획득하는 동시에 국내 시설에 수용된 고아들을 외국에 보내는 일석이조의 사업”, “고아입양이 외화획득이 되는데… 공인되지 않은 단체에서 일어나는 불미한 일은… 외화획득을 저해하는 일”⁴⁵⁾로서 국제입양의 주된 목적이 아동복지보다는 외화획득이라는 점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또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당시 “입양알선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고아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제7조)”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점 역시 입양 당국자 및 관계자들이 국제입양 통계나 국제입양 관련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에도 국제입양은 계속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빈부 격차의 확대, 대가족제도의 약화, 미혼모 증가 등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입양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국제입양수용국도 미국 중심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로 확대되면서 1970년대 국제입양 비율은 전체 입양의 75.9%를 차지하게 된다.⁴⁶⁾ 박순호는 유럽으로의 입양 추세를 크게 세 단계-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로서 노르웨이·스웨덴·벨기에 등 북유럽 국가들에 입양된 제1기(1956-1970),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를 중심으로 북유럽 외에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에 입양된 제2기(1971-1990), 그리

부모가 없거나 더 이상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줘 가정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44) 원영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25쪽. 그 외에 현행 아동복지 관련법의 기반이 되는 고아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고아입양특례법이, 1962년에 아동복지 설치기준령이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45) 같은 논문, 62쪽 재인용.

46)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1955-2005』, 198쪽.

고 국제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혼모 자녀들이 주된 입양대상이 된 제3기(1991년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⁴⁷⁾ 소위 ‘입양산업(industrie de l’adoption)’⁴⁸⁾의 성장을 이끌며 국제입양이 절정에 달했던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에 프랑스로의 한인입양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

1990년대 중반 프랑스 한인입양인의 총 수는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 12월 31일 <홀트아동복지회>가 제시한 한인입양인 수는 9,977명인데 비해, 프랑스한인입양인협회 <한국인의 뿌리>는 약 1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⁴⁹⁾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의 한인입양은 1970-1980년대에 정점에 달했으며, 1991년부터 100명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3년 프랑스에 입양된 239명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한국(147명), 베트남(53명), 콜롬비아(15명), 아이티(14명), 방글라데시(10명) 순이다. 1974년 프랑스 국내입양 비율은 88%, 국제입양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입양 비율이 급증했다.⁵⁰⁾ 1982-1986년 5년 동안 프랑스 국제입양인의 절반인 4,200명이 한리아동으로서 1986년까지 한국은 최대 입양송출국의 위치를 차지했다.⁵¹⁾ 당시 프랑스 국제입양인 5명 중 4명은 주로 아시아-특히 한국-,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왔다.⁵²⁾

47) 박순호,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701-702쪽. 제1기는 주로 스웨덴(52%), 스위스(10.4%), 노르웨이(9.9%), 벨기에(8.0%) 등 사회보장제도가 일찍이 발달한 북유럽 국가에, 제2기는 북유럽 외에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로 확대되었으며, 프랑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독일 순으로 한인입양 비율이 높았다. 제3기에 이르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인입양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48) Tobias Hübinette, “Histoire de l’adoption coréenne”, p. 3.

49) Françoise Maury, *L’adoption interracial*, p. 40; 이진명, 「프랑스 이민 정책과 한인 사회」, 216쪽.

50) Yves Denéchère, “Vers une histoire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p. 123.

51) Catherine Villeneuve-Gokalp, “L’adoption en France en chiffres et selon le pays d’origine”, p. 34.

52) Juliette Halifax & Catherine Villeneuve-Gokalp, “L’adoption en France: qui sont les adoptés, qui sont les adoptants”, pp. 1-2.

한인아동 입양수용국은 1980년에 10개국, 1990년에 30개국, 2004년에 77개국으로 계속 증가했다.⁵³⁾ 1990년 중반 이후 한인아동의 프랑스로의 신규 입양이 현저하게 줄면서 베트남·아이티·중국·에티오피아·러시아 등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표 2> 1958-2003년 프랑스 한인입양인 수(단위: 명)

연도	'58-' 68	'69-'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입양	12	818	378	571	972	560	522	484	827	859	942	975	703	589	417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입양	204	161	89	79	85	97	86	73	66	115	107	73	61	66	53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04)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1958-2003년까지 프랑스 한인입양인 수는 총 10,989명에 이른다. 1970년대까지는 외국에 입양된 한인아동의 57%가 전쟁과 가난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나 기아들이었고, 나머지 43%는 편부모나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전쟁고아 및 기아의 숫자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입양인의 80-90%를 차지했으며, 1990년도에 들어서서는 그 숫자가 전체 국제입양인의 90%를 넘어섰다.⁵⁴⁾ 그러나 1988년과 1991년에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비자가 발급된 한인입양인 수는 398명에서 93명으로 급감했다.⁵⁵⁾ 이런 감소 추세에 대해 한국주재

53) Yves Denéchère, "Vers une histoire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p. 123; Catherine Villeneuve-Gokalp, "L'adoption en France en chiffres et selon le pays d'origine", p. 35. 프랑스가 교부한 입양비자 수는 1980년에 935부, 1990년에 약 3,000부, 2004년에 약 4,000부로 1990년대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54) 임봉길, 「프랑스에 입양한 한국고아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의 형성」, 216쪽.

55) Yves Denéchère, "Les effets du développement sur les politiques d'adoption des enfants: les cas de la Corée du Sud et du Vietnam", p. 186. <표 2>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로 입양된 한인아동의 수는 1988년에 417명, 1991년

프랑스 대사는 1990년 1월 22일자 공문에서 “한국 정부는 매년 프랑스로 떠나는 입양인 수를 20%씩 줄여 중국에는 0%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주 어리고 건강한 아이들은 국내 입양될 것이고, 외국인들은 혼혈아와 장애아만 입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⁵⁶⁾

<표 3> 시기별 프랑스 한인입양인의 성별구성 추이(단위: 명, %)

구 분	계	여성	남성
1956-1970	83(100.0)	61(73.5)	22(26.5)
1971-1990	9,763(100.0)	5,476(56.1)	4,287(43.9)
1990년 이후	1,096(100.0)	465(42.4)	631(57.6)
소계	10,942(100.0)	6,002(54.9)	4,940(45.1)

(출처: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또 위의 <표 3> 시기별 프랑스 한인입양인의 성별구성 추이⁵⁷⁾를 보면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1956-1970년, 1971-1990년에는 여성 입양인의 비율이 높고, 1990년 이후에는 남성입양인의 비율이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⁵⁸⁾ 이러한 현상은 1970-1990년에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에 입양된 621명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621명 중 한인입양인 수는 총 581명으로 전체 88.1%를 차지하는데, 그중 여성의 비율이 52.4%를 차지했다.⁵⁹⁾ 또 프랑수아즈 모리

에 89명으로 위의 이브 드네세르의 통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56) Archives du Quai d'Orsay, *Mission de l'Adoption Internationale*, n° 6(“dépêche de l'ambassadeur à Séoul”)(22 janvier 1990).

57) 박순호,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705쪽(표 부분 일부 인용).

58) Catherine Villeneuve-Gokalp, “L'adoption en France en chiffres et selon le pays d'origine”, *Informations Sociales*, n° 146(2008/2), pp. 34-37.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동유럽 국가 및 브라질과 콜롬비아 같은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입양은 남아의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98%), 베트남(66%) 같은 아시아 출신의 입양은 여아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9) Juliette Halifax, *L'insertion sociale des enfants adoptés. Résultats de l'enquête “Adoption internationale et insertion sociale”*(INED-Les Amis des enfants du

(Françoise Maury)는 박사학위논문에서 1967-1991년에 출생해 프랑스에 입양된 50명의 한인입양인(여성 30명,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위의 사례와 유사하다. 여성이 60%, 남성이 40%인 표본 집단의 성비 불균형은 한국인들은 남아보다 여아를 많이 버리는 반면 유럽인들은 여아를 더 많이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⁶⁰⁾ 실제로 1960-1980년대 초까지 태어난 아이가 딸이면 몰래 죽이거나 국외로 입양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젠더 관점에서 볼 때 여성입양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가부장적 젠더 관계에서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그리고 1970-1980년대 한국정부가 인구 억제를 위해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 점과 무관치 않다. 그 외에 프랑스 한인입양인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1956-1970년에는 대체로 1-3세의 비중이 가장 크나, 1971-1990년과 1990년 이후로 가면서 1세 미만의 입양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⁶¹⁾

한편, 입양은 필연적으로 ‘정체성(identité)’의 변화를 수반한다. 흔히 국제입양의 딜레마는 입양인들이 확고한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입양과 관련된 정체성 문제는 대개 아동기부터 언어 문제를 비롯한 문화적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경우 입양부모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프랑스

monde, 2000), p. 13.

60) Françoise Maury, “Les mécanismes intrapsychiques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t interraciale: l’adoption des enfants coréens en France”, p. 139. 50명의 한인입양인 중에서 32명이 <원인>, 4명이 <인간의 대지-프랑스>, 10명이 <외국 어린이의 햇빛>, 3명이 <마르세유 입양기관>, 1명이 <세계 어린이의 친구>를 통해 입양되었다. 50명 중 19명은 1975년 이전에 태어나 5-10세에 입양되었다. 50명 중 8명이 친형제자매였고, 3명이 장애를 가진 채 입양되었다. 또 모리는 1957-1991년 프랑스에서 출생해 31개 가정에 입양된 53명(여 24명, 남 29명)의 표본 집단에 대한 연구도 병행했는데, 국제입양과 달리 국내입양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61) 박순호,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706쪽. 1956-1990년대 전체 한인입양인(10,942명)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1-3세가 4,314명(39,4%), 1세 미만인 2,614명(24,1%), 4-6세가 2,551명(23,3%), 6세 이상이 1,436명(13,1%)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고, 입양부모의 성(姓)과 재산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 점에서 입양인에게는 일반 이주민 또는 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동화주의 내지 사회통합 정책에 따른 공화주의 시민교육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다. 장기간의 입양수속 과정에서 입양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입양이 성립된 완전입양의 경우 법적으로 ‘파양(révocation)’은 불가능하다. 그 점에서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양이나 시민권 문제로 인한 입양인들의 고통과 불행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와 지역사회에서의 인종차별 경험을 겪으며 고통스런 삶을 살다 양부모를 떠나 독립하거나 친부모를 찾아 한국을 찾는 ‘불행한’ 입양인의 이미지로 재현되는 경우도 있으나 프랑스 한인입양인,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더 빨리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인입양인은 입양 초기부터 한국인이라는 종족 정체성과 입양수용국의 문화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입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1989-1990년에 <인간의 대지-프랑스>가 1960-1970년대 프랑스에 입양된 688명의 국제입양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국제입양인이 사회적응 및 통합에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거나, 학업이 지체되거나, 인종차별, 정체성 문제에 따른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으나, 70%의 조사대상자가 어려움 없이 프랑스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된 것으로 응답했다.⁶²⁾ 조사대상자들 중 한인입양인의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68-1978년에 <인간의 대지-프랑스>가 입양시킨 1,500명의 국제입양인 가운데 833명이 한인입양인임을 감안할 때 한인입양인의 사회적응 및 통합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

62) Terre des Hommes-France, “Enquête sur l’adoption internationale. Bilan dix ans après”(résultats en 1992); “Enquête sur l’adoption internationale(II). Les enfants adoptés ont la parole”(résultats en 1995); Yves Denéchère, *Des enfants venus de loin*, p. 146.

적인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학업성취(réussite scolaire)’ 여부는 입양인이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편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점에서 한인입양인의 학업성취도는 괄목할만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입양인의 경우 남성입양인보다 수학기간이 더 길고,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는 특징을 나타낸다.⁶³⁾ 예를 들어 모리는 입양가정의 친자녀와 국내 및 국제입양인의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프랑스인의 64,7%가 고등교육을 받는 반면, 한인입양인의 75%가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인입양인들이 프랑스인의 평균 또는 국내입양인의 평균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⁶⁴⁾ 앞에서 소개한 프랑스 한인입양인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업성취의 사례로 꼽는 펠르랭이나 플라세의 경우처럼 한인입양인의 양부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학사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한인입양인, 특히 한인여성입양인의 한국 방문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며, 동시에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백인인 프랑스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을 “프랑스인과 다른 프랑스인” 또는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정의한다. 보통 입양 나이는 친부모 찾기 또는 뿌리 찾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보통 1-3세처럼 아주 어릴 때 입양된 경우에는 친부모 찾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반면, 6-7세 이상일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펠르랭과 플라세 같이 아예 한국인의 정체성을 애써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생후 6개월에 프랑스로 입양된 플레랭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어난 곳은 한국이지만 자신은 뱃속까지 프랑스인이며,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관심이 없고, 친부모를 찾아볼 생

63) Enfance et Familles d'Adoption, “La scolarité des enfants adoptés. Comparaison avec des enfants non adoptés”(décembre 2006), p. 15.

64) Françoise Maury, “Les mécanismes intrapsychiques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t interracial: l'adoption des enfants coréens en France”, p. 246.

각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또 플라세 같이 입양부모가 한국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를 배우라고 권했지만 자신을 한국에 다시 보내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성인이 된 한인여성입양인(Ounie Lecompte, 1975년 입양)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 <여행자>(원제 Une Vie Toute Neuve, 2009)나 한인여성입양인(Cécile Delaitre, 1971년 입양)의 정체성 문제와 국제입양 이면의 숨은 문제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원제 Winter Garden, 2014) 등이 소개되면서 국제입양폐지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8년 이후 여러 경위로 한국을 방문한 한인입양인을 중심으로 1995년에 최초의 국제입양인 단체 <한국인의 뿌리>가 프랑스에서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계간지 「함께(Hamkae)」를 발간하고,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뿌리인 한국의 문화와 전통, 언어를 소개하는 정기적 모임을 갖고 한국 방문을 기획하는 등 전국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⁶⁵⁾ 이와 별도로 199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한인아동의 국제입양 비율을 제한함과 동시에 한인입양인에게 2-3주 동안 한국의 문화관광을 몸소 체험케 하는 ‘한국으로의 귀환(retours en Corée)’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인입양인에게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점을 알리고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인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목적은 성장과정에서 뿌리 찾기를 통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입양된 가정과 사회, 국가에 잘 적응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다.⁶⁶⁾

65) <http://www.racinescoreennes.org/>

66) 김경옥,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연구-유럽 지역 국외입양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116쪽; 이예원, 「한국사회의 귀환 입양인 운동과 시사점」, 『민족연구』 37권(2009), 158-178쪽. 한국정부의 국제입양인 사후관리 정책에 힘입어 2010년 8월 15개국에서 온 500명 이상의 입양인이 모여 <국제한인입양인협회(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 IKAA)>를 조직해 활동 중이다. IKAA 외에도 1998년부터 국제입양인의 자조,

IV. 맺음말

지금까지 1960-1990년대 프랑스의 입양정책과 국제입양, 그리고 프랑스 한인여성입양의 양상 및 정체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입양은 주로 미국 위주로 이뤄져왔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입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한국은 전쟁, 가난, 외화벌이, 순혈주의적 가부장제와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 산업화와 미혼모의 양산 같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양상이 결합된 특유의 사회현상을 낳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대 국제입양송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 1970년 이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한인입양수용국이 된 프랑스는 입양 동기 및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련의 입양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제입양정책 및 양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입양송출국이건 수용국이건 간에 국제입양 관련법 및 정책은 정상가정을 찾아주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입양이나 가계계승을 위한 입양에서 입양인의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 국제입양의 과정에는 국가 외에도 입양인과 입양부모, 입양가정, 입양알선기관, 국제기구 등 여러 다른 관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매우 복잡한 ‘관계의 변증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한민국제입양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까지 국내 역사학계에서 한인이주 및 디아스포라에 대한 다수의 연구 성과와 비교할 때 국제입양 내지 한인(여성) 입양인에 대한 역사연구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특히 국제입양에 있어서도 일반이주에서 나타나는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서 젠더 관점에서 한인여성입양인의 가시화를 통한 국제입양의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은 트랜스내셔널 이주역사의 지평을 넓히는 데 분명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과 프랑스에서 한인(여성)입양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고, 사료 획득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 연구가 향후 프랑스 한인여성입양인 관련 역사연구의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향후 필자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해 국경을 넘는 한인여성입양인의 경험과 기억을 역사화 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사료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구술사 방법론을 적극 활용해 프랑스 한인여성입양인의 동화 문제와 이주자로서의 성적·인종적·민족적·문화적 정체성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 역시 후속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투고일자: 2019. 1. 20, 심사일자: 2019. 2. 7, 게재확정일자: 2019. 2. 7〉

▶ 주제어 : 트랜스내셔널 이주(transnational immigration),
국제입양(international adoption), 인종 간 입양(interracial adoption),
프랑스 국제입양정책(international adoption policy in France),
프랑스 한인여성입양(adoption of the Korean women in France)

참고문헌

1. 사료

- 외교부 외교사료관, '고아 구호(1958-1959)', P-0001-11/1485/457.
 외교부 외교사료관, '고아 국외입양(1956-1960)', P-0002-18/1485.4/1390.
 외교부 외교사료관, '고아 국외입양(1974-1982)', 2011-0084-0001.
 보건복지부 통계자료(2006, 2012).
 재외동포재단 통계자료(2006).
 Office de Radiodiffusion-Télévision Française, "Corée: les enfants invisibles",
Cinq Colonnes à la Une(6 octobre 1967).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Adoption simple et adoption
 plénière: quelles différences?"(10 mai 2017).
 Archives de TDH-F, "Note du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s Affaires Sociales
 de Corée du Sud(27 février 1971); "Courriers de TDH-F à l'ambassade
 de Corée du Sud en France"(30 mars 1971); "Courriers de TDH-F à
 l'ambassade de France à Séoul"(23 avril et 13 mai 1971); "Conventions
 administratives"(5-6 novembre 1977).
 Archives du Quai d'Orsay, *Mission de l'Adoption Internationale*, n° 6("dépêche
 de l'ambassadeur à Séoul")(22 janvier 1990).
 Terre des Hommes-France, "Enquête sur l'adoption internationale. Bilan dix ans
 après"(résultats en 1992); "Enquête sur l'adoption internationale(II). Les
 enfants adoptés ont la parole"(résultats en 1995).

2. 신문기사

- 중앙일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찾아서」(2018.10.17.).
 한겨레신문, 「입양아에서 프랑스의 '폴키프'가 되기까지...」(2012.05.12.).

3. 연구문헌

- 김경옥,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연구-유럽 지역 국외입양인을 중심으로』, 경
 북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박순호,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권 6호(2007).

- 서종희, 「익명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프랑스의 입양절차」, 『가족법연구』 28권 3호(2014).
- 이예원, 「한국사회의 귀환 입양인 운동과 시사점」, 『민족연구』 37권(2009).
- 이진명, 「프랑스 이민 정책과 한인 사회」, 『유럽 한인의 역사(상)』(국사편찬위원회, 2012).
- 이해성, 「폴란드에 남겨진 북한 전쟁고아의 자취를 찾아서」, 『중동유럽한국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
- 이홍(LI Hong),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le cas des enfants coréens」, 『프랑스어문교육』 제47집(2014.11).
- 임봉길, 「프랑스에 입양한 한국고아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의 형성」, 『재외한인연구』 15호(2003).
- 원영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1990).
- 토비아스 위비네트,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뿌리의 집 옮김(소나무, 2008).
- _____, 「유럽 한인의 역사적 경험: 해외 입양 및 입양」, 『유럽 한인의 역사(하)』(국사편찬위원회, 2013).
-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1955-2005』(홀트아동복지회, 2005).
- Boulanger, François, *Enjeux et défis de l'adoption: étude comparative et internationale* (Paris: Economica, 2001).
- Cogliati, Isabelle, "Adoption internationale et respect de l'enfant", *Cahiers rémois d'études internationales*, n° 1(1999).
- Crone, Richard, et al., *L'Adoption: aspects internes et internationaux*(Paris: Defrénois, 2006).
- Denéchère, Yves, "Vers une histoire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102(2009/2).
- _____, "Nouvel acteur et nouveau phénomène transnationaux: Terre des Hommes et l'adoption internationale(1960-1980)", *Relations internationales*, n° 142(2010/2).
- _____, "Des adoptions d'Etat: les enfants de l'occupation française en Allemagne, 1945-1952", *Revue d'Histoire Moderne & Contemporaine*, n° 57-2(2010/2).
- _____, "Les effets du développement sur les politiques d'adoption des enfants: les cas de la Corée du Sud et du Vietnam",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e: Apports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au développement socio-économique* (Hanoï, 2011).

- _____, *Des enfants venus de loin-Histoire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Paris: Armand Colin, 2011).
- Denéchère, Yves & Niget, David, *Droit des enfants au XX^e siècle: Pour une histoire transnationale*(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5).
- Enfance et Familles d'Adoption, "La scolarité des enfants adoptés. Comparaison avec des enfants non adoptés"(décembre 2006).
- Halifax, Juliette, *L'insertion sociale des enfants adoptés. Résultats de l'enquête "Adoption internationale et insertion sociale"*(INED-Les Amis des enfants du monde, 2000).
- Hübinette, Tobias, "The adopted Koreans of Sweden and the Korean adoption issu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6, n° 1(2003).
- Hübinette, Tobias, "Histoire de l'adoption coréenne", Eleana Kim (ed.), *Community 2004.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Seoul: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004).
- Huet, Alexandra et al., "L'adoption d'un enfant étranger", *Revue juridique de l'Ouest*, n° 4(1999).
- Maury, Françoise, "Les mécanismes intrapsychiques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t interrassiale: l'adoption des enfants coréens en France", *Thèse de doctorat(Psychologie)*, Université de Paris VIII(1995).
- _____, *L'adoption interrassiale*(Paris: L'Harmatan, 1999).
- Prébin, Elise, "Adoption internationale: les revenants de Corée", *Thèse de doctorat (Ethnologie et Sociologie comparative)*, Université de Paris X(2006).
- Trillat, Brigitte, "Une migration singulière: l'adoption internationale", *L'Adoption des enfants étrangers*(Paris: Centre International de l'Enfance, 1993).

〈Résumé〉

Les aspects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t de l'adoption des femmes coréennes en France des années 1960 aux années 1990

Ji-Young MOON

L'adoption internationale a un caractère 'transnational' en ce sens qu'il s'agit d'un phénomène universel au niveau mondial. En termes de migration transnationale, l'adoption internationale montre un modèle très particulier de migration selon lequel les adoptés franchissent la frontière indépendamment de leur volonté ou de leur choix, contrairement à la migration générale telle que la migration de travail ou la migration par mariage, et que l'on peut définir comme 'migration involontaire de contrat' entre les parties concernées. En fait, la Corée était le plus grand pays d'envoi d'adoptions au monde, où de nombreux adoptés coréens ont été envoyés en France après les États-Unis, des années 1970 au milieu des années 1990. Néanmoins, l'histoire de l'adoption internationale par la Corée a longtemps été oubliée, parfois même cachée et non sujette à des recherches sous la stigmatisation d'une figure nationale de 'pays exportateur de bébés'.

L'objectif de cette étude est donc de clarifier la position et la signification de l'adoption internationale dans l'histoire des migrations transnationales en révélant le contexte historique et les réalités de l'adoption internationale coréenne. À cette fin, je me concentrerai sur deux aspects: la politique d'adoption interraciale de la France, et le mode d'adoption des femmes coréennes en France et la question de leur identité, en se fondant les cas de la France des années 1960 aux années 1990.

〈Abstract〉

The Aspect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e Adoption of Korean Females in France, 1960s-1990s

Ji-Young MOON

International adoption has a 'transnational' nature in that it is a universal phenomenon at the global level. In terms of trans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adoption shows a very unique pattern of migration that adoptees cross the border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or choice, unlike general migration such as labor migration or marriage migration, and that can be defined as 'involuntary migration by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fact, Korea was the world's largest adoption-out country where many Korean adoptees were sent to France after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70s to the mid-1990s. Nevertheless,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adoption has long been forgotten, sometimes even concealed and not subject to research under the stigma of a national figure of 'baby exporting countr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osition and meaning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the history of transnational migration by reveal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realities of Korean international adoption. To this end, I will focus on two aspects, the interracial adoption policy of France, and the pattern of adopting Korean females in France and the issue of their identity, basing on the cases of France from the 1960s to the 1990s.